

#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17·11·10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122(창전동)
2. 장호원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19

**제3조(쉼터의 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 회의, 교육,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한다.

**제4조(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쉼터를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자의 준수 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시설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